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(안)

검 토 보 고 서

(민원감사담당관 소관)

2021. 6. 15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(안)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8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와 제134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10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0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,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개요
- 나. 세입·세출의 결산
- 다. 재무제표
- 라. 성과보고서
- 마. 결산서 첨부서류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, 제134조(결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(결산 승인)

○ 관련서류 : 2020회계연도 결산서(안) 및 결산검사 의견서

5. 검토의견

가. **민원감사담당관**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결산

1) 세입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 (결산서p)	예산현액	징수결정액(A)	세입결산액(B)	징수율(B/A)
민원감사 담당관 (64p)	1,000,000	1,344,440	1,344,440	100%

- 2020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100만원이며, 징수 결정액은 134만 4천원, 세입결산액은 134만 4천원으로 징수율은 100%임.

2) 세출결산현황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보조금 반납금	집행잔액	
					금액	비율(%)
민원감사 담당관 (117p)	207,138,000	172,073,550			35,064,450	16.9%

- 2020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2억 713만 8천원이며, 지출액은 1억 7,207만 3천원, 집행잔액은 3,506만 4천원임.
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16.9%로 2019회계연도의 8.37%보다 8.53% 증가하였음.

가) 집행잔액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현액 (A)	집행잔액 (B)	비율 (B/A)	사 유 별				
				보조금 정산잔액	낙찰 차액	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	지출 잔액	예비비
민원감사 담당관	207,138	35,064	16.9			33,367	1,696	

- 2020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3,506만 4천원이며,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6.9%임.
 집행잔액 사유는,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3,336만 7천원, 지출잔액 169만 6천원임.

※ **결산서 117~118p, 심사 보조자료 11p 참고**

나. 검토의견

- **민원감사담당관의 경우**
 -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의 「기타보상금」 3,000,000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,**(심사 보조자료 12쪽 참고)**
 - 기본경비 중 「국내여비」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나, 이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출장 자제, 각종 현장조사 미실시 등이

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(심사 보조자료 13쪽 참고)

- 그 외 특이사항은 없음.

-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련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14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82조(결산 승인)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지방회계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10조(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49조(예산의 전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. <신설 2020. 6. 9.>

1.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2.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6. 9.>

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

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